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은 인증받으세요!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5월 20일(월) ~ 6월 3일(월)까지 접수 -

올해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4월 24일(수)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기존의 최저점수 통과 시 인증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 전·후】

유형	기 존	개 편
선정 단계	▶ 최저점수만 통과하면 인증	▶ 최저점수 상향(영역별 100분의 50→ 60, 총점 700점→ 800점/1,000점 만점) ▶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 기본 운영 상황 평가비중 축소 및 성과 배점 확대 ▶ 신청유형을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으로 구분하여 체계화·전문화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시상
인센티브	▶ 인센티브 부족	▶ 여신금리 우대은행 확대 ▶ 민간위탁사업 참여 시 가점 상향
행정 경감	▶ 평가지표 중복 및 행정부담 가중	▶ 평가지표 효율화·간소화(19개→12개)

첫째, 역량 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했다. 먼저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I형

(광역형), II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했다. 아울러 선정기준도 개선하여 우수 서비스 창출 지표를 신설하고, 성과배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인증 최저 점수도 상향했다. 또한, 선정기관 내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차등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 * I형(광역형): 온라인 취업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II형(지역특화형): 청년·여성·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둘째, 우수 인증기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강화했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상향된다. 이 외에도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셋째,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20일(월)부터 6월 3일(월)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5월 9일(목)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결과는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 * 자세한 사항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 참조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올해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태훈 (044-202-7671)
		담당자	사무관	류영선 (044-202-7683)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태환 (043-870-8875)
		담당자	부연구위원	임정훈 (043-870-8580)



1. 사업개요

- **[목적]**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 **[내용]** 매년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유효기간 3년)
 - (신청대상) ①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②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③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유형) 사업유형 및 신청유형별 택1 하여 신청
 - (사업유형) ①직업소개사업(유료) / ②직업소개사업(무료) / ③직업정보제공사업 中 택1
 - (신청유형) ① I 형(광역형) / ② II 형(지역특화형) 中 택1
 - * (광역형) 온라인 취업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지역특화형) 청년·여성·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 (선정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 **[연혁]** '06~'07년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 '08년부터 매년 실시
- **[운영체계]**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평가 기준 마련 및 최종 심사,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공모 등 제반 운영

- **(인센티브)** 3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고용 분야 위탁사업 참여 시 우대, 시중은행 여신금리 우대 등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유효기간(25~27)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2. '24년 주요 개편 내용

① 역량있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 프로세스 재정립

(‘24.3.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개정)

- (신청유형 체계화) 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I형(광역형), II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
- (선정기준 개선)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 성과배점 비중을 상향하고 인증 최저점수도 상향*
 - * 인증 최저점수를 구성항목의 영역별로 100분의 50에서 60으로, 총점은 700점에서 800점(1,000점 만점)으로 상향
- (시상방식 개편)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으로 차등하여 시상

②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로 사업 효과성 제고

- (인센티브) 금리 우대(농협, 기업은행 등), 민간위탁 가점 상향, 기타 행정처분 감경 및 민간위탁사업 우선선발 등
- (홍보) 우수사례집,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 인지도 제고 지원

③ 평가지표 간소화(기존 19개→ 12개)로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 사업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 통폐합 등

3. 추진일정

- 사업공고(‘24.4.24.) → 사업설명회(5.9) → 사업신청(5.20.~6.3.) → 평가(6~10월) → 최종심의(11월) 및 수여식(12월)